

국제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

2018. 9. 1.

세종텔레콤(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국제전용회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등)

-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것입니다.
- ②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제전용회선: 계약자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과 국내의 두 지점 사이를 직접 연결해 놓은 회선(국제구간회선과 국내구간회선으로 구성)
- 2. 단말기기: 전기통신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기기
- 3. 회선종단장치: 국제전용회선과 단말기기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환 및 부호화, 회선의 접속, 보전, 개방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 (MODEM, DSU/CSU 등)
- 4. 사용계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 5. 계약자: 회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
- 6. 공동사용: 하나의 국제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 7. 타인사용: 국제전용회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국제전용회선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8. 접속: 국제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직접 연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
- 9. 해제: 회사 또는 계약자가 승낙 이후 국제전용회선의 개통 전에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10. 해지: 회사 또는 계약자가 국제전용회선의 개통 후에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4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등)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 ② 외국통신사업자가 관할하는 외국측 구간에 대한 이용조건등은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③ 외국통신사업자와 이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그 협정에 의합니다.
- ④ 본 약관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비스 등이 필요할 경우 회사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사용계약

제1절 통칙

제5조 (사용계약의 단위)

사용계약은 각각의 국제전용회선 1회선마다 체결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종류 및 규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규 격	내 용
전화급 회선	보통품질회선	300~3400 헬츠의 주파수대역 전송이 가능한 회선으로 ITU-T 권고 M1040 조건의 회선
	특별품질 회선	300~3400 헬츠의 주파수대역 전송이 가능하고 회사가 회선의 전송특성에 관한 품질보상을 한 회선으로서, ITU-T 권고 M1020 또는 M1025 조건의 이용회선
중속디지털 회선	2400 bps 회선	초당 2400 비트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회선
	4800 bps 회선	초당 4800 비트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회선
	9600 bps 회선	초당 9600 비트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회선
고속디지털 회선	56/64 Kbps	초당 56 또는 64Kbps 까지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회선
	128 Kbps	초당 128 Kbps 까지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회선
	192 Kbps	초당 192 Kbps 까지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회선
	256 Kbps	초당 256 Kbps 까지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회선
	384 Kbps	초당 384 Kbps 까지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회선
	512 Kbps	초당 512 Kbps 까지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회선
	768 Kbps	초당 768 Kbps 까지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회선
	1024 Kbps	초당 1024 Kbps 까지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회선
	1544 Kbps	초당 1544 Kbps 까지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회선
2048 Kbps	초당 2048 Kbps 까지 데이터 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회선	

※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종류 및 규격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요구 시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추세를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 ① 서비스는 사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단기사용: 1개월 미만의 사용기간을 정하여 매일 24시간 사용하는 것
 - 2. 장기사용: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정하여 매일 24시간 사용하는 것
- ② 고속디지털회선의 최소사용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③ 일방향전송을 위한 회선은 고속디지털회선으로 장기사용이어야 합니다.

제8조 (예비회선의 설치)

회사는 국제전용회선의 장애에 대비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예비회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지역)

회사는 서비스 제공국가 또는 지역을 별도로 공시합니다.

제10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 ①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설비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집니다.
- ③ 계약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절 신청 및 승낙

제11조 (신청)

①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납부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2.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 (신청사항의 변경 및 철회)

계약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낙 전까지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통일의 연기에 대하여는 제21조(개통)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13조 (승낙)

① 회사는 사용신청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1. 계약자는 회선구성을 위한 회사 소유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계약자 구내 또는 건물내에 설치되는 회사 소유의 설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구내 또는 건물내에 관로등의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승낙의 제한 및 유보)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계약자가 사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요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체납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다만, 부족한 설비를 계약자가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설치장소가 구내통신설비 설치기준등에 부적합한 경우
7.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 (공동사용 신청)

① 국제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2.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 등 언론, 방송, 출판 관련 상호간
 3.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4. 은행업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5.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6. 위 각호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 ② 제1항에 의한 공동사용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공동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사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사용할 자가 연서하여 회사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납부책임자가 됩니다.

제16조 (공동사용관계 입증)

- ① 회사는 공동사용자 중에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에게 제시하여 공동사용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공동사용의 대표자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타인사용의 신청)

국제전용회선을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회사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상호접속의 신청)

- ① 계약자는 국제전용회선을 다른 전용회선과 상호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할 장소
 2. 접속될 회선의 종류
 3. 상호접속방법 및 접속구성도
- ② 회사는 상호접속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승낙합니다.
 1. 동일인의 사용에 속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선 상호간의 접속
 2. 공동사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3. 그 밖에 회사가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국제전용회선과 공중망의 접속은 당해 공중망의 이용약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④ 회사는 상호접속된 회선의 전구간에 대한 전송품질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9조 (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

- ① 계약자는 국제전용회선을 동일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계약자와 구내교환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방법 및 접속구성도
2. 공중전화망(PSTN)과의 비접속장치도

- ② 계약자는 국제전용회선을 타인사용 구내전화기가 수용된 구내교환설비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
- ③ 전화, 팩시밀리 전송용의 국제전용회선을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중전화망(PSTN)과 접속하지 아니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3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20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 ① 계약자측의 단말기기와 회선종단장치(이하 "단말기기 등" 이라 합니다)는 계약자가 설치 및 유지,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③ 서비스의 품질개선과 회선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측 설비에 회선 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개통)

- ① 서비스의 개통은 회선 설치공사가 끝나고 단말기기 상호간 통신이 가능한 때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한 단말기나 프로그램등을 회사의 교환설비에 접속하는 경우에 계약자 설비와 교환설비간 상호 연동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기간의 확인시험을 거친 후 개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후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당초 개통희망일을 지정한 일자에 개통이 가능하면 그 날을 개통예정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자측의 사유로 개통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통예정일의 10일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기를 승낙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또는 개통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⑥ 제4항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하는 경우 재개통일에 그 회선이 개통한 것으로 봅니다. 단, 회사 또는 외국통신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고장신고 및 처리)

- ① 계약자는 국제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계약자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4절 계약의 변경 등

제23조 (계약사항의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 또는 납부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변경
 2. 공동사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
 3. 서비스 종류 및 규격변경
 4. 단말기기 등의 설치장소 변경
 5. 요금할인을 받는 장기사용의 경우 계약기간 변경
 6. 국제회선구간 변경(사용기간이 동일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 한함)
 7. 단기사용기간 변경(단기사용에서 장기사용으로의 변경 포함)
- ② 제1항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제14조 의거한 승낙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계약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계약해제 및 해지)

- ① 계약자가 서비스제공 개시 전에 사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통예정일의 10일전까지 해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속디지털 회선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해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서비스제공 개시 후에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요금할인을 받는 장기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는 "별표"에서 정한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서비스 사용 정지된 후 30일 이내에 그 정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사용정지 등

제26조 (사용정지)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요금, 가산금 등을 최초의 납기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용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 등을 연결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사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사용정지 7일전까지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지를 해제합니다.

제27조 (사용제한)

외국의 법령 또는 외국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정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이 정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요 금

제1절 요금의 종류

제28조 (요금의 종류)

①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요
회선사용료	국제전용회선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납부하는 요금
일방향회선료	송수신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매월 일정하게 납부하는 요금
예비회선료	예비회선의 설치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납부하는 요금
설치비	신규 가입, 설치장소 변경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실비
장치사용료	회사가 제공하는 회선중단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납부하는 요금
해제료	사용계약 승낙후 개통일 이전에 서비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준비에 따른 비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
할인반환금	요금할인을 받는 장기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소비용 보상으로 납부하는 수수료

② 제1항에 의한 요율, 적용기준 및 대상 등은 "별표"와 같습니다.

③ 국제전용회선중 외국의 통신사업자가 관할하는 구간의 요금(이하 "외국측 요금"이라 합니다)은 당해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절 요금의 산정방법

제29조 (장기사용요금)

① 회선사용료 등 월액으로 하는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월 사용요금으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요금월 중도인 경우에는 월요금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사용요금으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일수에 포함하되, 해지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장기사용자가 단기사용의 기간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장기사용의 1월 요금으로 합니다.

제30조 (단기사용요금)

① 단기사용요금은 개통시각부터 기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하고 잔여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것은 1일로 계산합니다.

② 단기사용요금은 일액으로 계산하며, 첫째날은 장기사용월액의 20%, 그 다음날부터는 매 1일마다 장기사용월액의 30분의 1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장기사용의 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기사용의 월액으로 합니다.

③ 단기사용의 사용일수 계산은 장기사용의 계산방법과 같습니다.

제3절 요금의 청구

제31조 (요금의 납부청구)

- ① 회사는 요금의 납부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납부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청구서가 납부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단기사용 또는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용의 경우에는 개통일전에 그 사용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요금 통합청구)

- ① 회사는 납부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2이상의 사용계약에서 발생한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합니다. 이 경우의 통합청구는 동일 납부책임자의 것에 한합니다.
- ② 국제전용회선에 관련된 외국측 사업자의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측 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한국측 구간요금과 외국측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외국측 구간요금을 통합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납부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정한 자인 경우에는 중앙블로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이의신청)

- ① 납부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의신청 처리결과 요금이 감액되는 경우 기 납부요금에 대하여 제38조(요금의 반환)에 따라 처리하고, 납부되지 않은 요금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재지정하여 조정된 요금의 납부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제4절 요금의 납부

제34조 (요금의 납부책임)

요금의 납부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집니다. 다만,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납부책임자로 하되 나머지 공동사용자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제35조 (요금의 납기일)

국제전용회선 요금의 납기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사용월의 그 다음 월내의 납기일
 - 가. 회선사용료
 - 나. 일방향회선료
 - 다. 예비회선료
 - 라. 장치사용료
 - 마. 설치비
2. 회사가 지정하는 납기일
 - 가. 단기사용에 대한 요금

나. 해제로

다. 할인반환금

라. 당월의 중도에 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당월까지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

제36조 (요금의 사전납부)

- ① 납부책임자는 회사에 신청하여 요금이 청구되기 전에 미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납부할 금액은 최근 3월간의 요금을 평균한 1월분 이상으로 하며, 회사는 이 금액을 요금확정월에 정산 처리합니다.

제37조 (사용정지중의 요금납부)

전용설비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도 정지기간중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5절 요금의 반환 등

제38조 (요금의 반환)

- ① 회사는 계약자의 책임(상대국 단말기기 등을 포함합니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제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시각부터 60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단시간 1시간마다 일액요금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이때 그 단수가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봅니다.
- ② 제1항의 일액요금은 장기사용월액요금의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거나, 사전납부금액의 정산 또는 요금 이의신청 처리결과 반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반환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반환금에 대하여 반환 받을 사람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요금을 반환 받을 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요금의 할인)

회사는 동일 계약자가 국제전용회선을 장기사용하거나 또는 3회선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요금을 할인합니다.

제40조 (가산금의 부과)

회사는 납부책임자가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납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미납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제 5 장 보 칩

제41조 (손해배상)

회사는 계약자가 국제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속 24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최저3배를 기준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상대국 단말기기 등을 포함합니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42조 (요금연체 통지)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 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자동이체 할인 폐지는 이 약관 시행일 이후 가입 고객에 향하여 적용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6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별표1] 요금표

1. 회선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 원/월)

품목	규격	사용금액		비고
		장기(표준월액)	단기	
전화급	보통품질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날 : 장기사용 월액의 20% • 그 다음날 1일마다 : 장기사용 월액의 3.33% (1/30) ☞ 일액 합산요금이 장기 사용 월액 초과시 월액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선식 1회선 기준 • 속도에 무관한 요금 • 요금적용 대역 - 1대역 : 동남아 - 2대역 : 북미, 대양주 - 3대역 : 유럽, 중동 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 1대역	2,945,000		
	- 2대역	3,272,000		
	- 3대역	3,599,000		
	특별품질회선			
	- 1대역	3,272,000		
- 2대역	3,681,000			
- 3대역	3,926,000			
중속부호급	2400bps회선	2,29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부호급은 단기사용을 제공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단일 요금 • 속도별 차등 요금
	4800bps회선	2,617,000		
	9600bps회선	3,272,000		
고속급	56/64Kbps회선	4,09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부호급은 단기사용을 제공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단일 요금 • 속도별 차등 요금
	128Kbps회선	6,544,000		
	192Kbps회선	8,181,000		
	256Kbps회선	9,817,000		
	384Kbps회선	12,271,000		
	512Kbps회선	16,362,000		
	768Kbps회선	20,452,000		
	1,024Kbps회선	24,543,000		
	1,544Kbps회선	32,724,000		
	2,048Kbps회선	40,905,000		

※ 상기 표의 요금은 한국측 구간에 대한 요금이며, 전체요금은 외국측 구간의 요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2. 요금할인

1) 장기계약할인

계 약 기 간	적 용 요 율	비 고
1년 계약	장기회선사용료 월액의 95%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시 할인반환금 부과
1년 계약후 계속사용	장기회선사용료 월액의 95%	
2년 계약	장기회선사용료 월액의 93%	
2년 계약후 계속사용	장기회선사용료 월액의 90%	
3년 계약	장기회선사용료 월액의 90%	
3년 계약후 계속사용	장기회선사용료 월액의 85%	
5년 계약	장기회선사용료 월액의 85%	
5년 계약후 계속사용	장기회선사용료 월액의 82.5%	

2) 다회선 사용할인

동일 계약자가 국제전용회선(예비회선 제외)을 3회선이상 사용하는 경우

- 할인율: 20%
- 할인대상 요금: 장기사용중인 회선 사용료
- 적용방법
 - * 3회선이상 사용하는 계약자의 2차 회선부터 적용하되 요금이 낮은 회선부터 우선적으로 할인 적용
 - * 요금월 중도에 회선의 증설 또는 일부 해지의 경우에 당해월의 요금은 증설후 또는 일부 해지건의 할인 적용

3) 중복할인 적용

- *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과 다회선 사용에 따른 중복할인은 허용함

3. 일방향회선료

- 1) 개념: 국제전용회선의 송수신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
- 2) 적용대상: 고속디지털회선에 한함
- 3) 적용요율: 장기사용회선사용료 월액의 75%

4. 예비회선료

- 1) 개념: 예비회선의 설치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
- 2) 적용요율: 장기사용회선사용료 월액의 70%
- 3) 적용방법: 예비회선을 실제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중의 요금은 장기사용료 월액을 적용

5. 설치비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대상 품목 및 규격		신 규 (회선당)	설 변 (측당)	비 고
전화급 회선		28,000	28,000	* 4선식 1회선 기준 * 장,단기 동일
디지털 회선	64 kbps 이하	28,000	28,000	
	128 kbps 이상	100,000	100,000	

6. 장치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기기명	단위	월액요금	비 고
SHELF/PSU	식	12,000	중속도용
DSU-SR-S	카드	8,000	중속도용
DSU-SR-D	대	8,000	중속도용
DSU-56/64-D	대	10,000	56/64K 용
CSU	대	10,000	128~768K 용
I-MUX	대	80,000	6M 용
ROUTER	대	80,000	CISCO 2501 기준

* 장,단기 사용의 효율은 동일하며, 월중 개통 또는 해지에 따른 요금의 일할계산은 하지 않으며 해당월의 요금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매월 초일에 개통 또는 말일에 해지된 경우에는 당월 요금에 가산.

7. 해제료

- 당해 고속디지털회선 장기회선 사용료 월액의 10%

8. 할인반환금

- (할인전 월 사용료 * 사용개월수) * (계약기간의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요금할인을 받는 장기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때
- 요금월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월의 이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기간의 월수에 포함

9. GMPL (Global Managed Private Line) 서비스

9-1. 회선사용료

1) 한국-일본, 홍콩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속도(bps)	표준전용료	예비전용료	NMS이용료	Mux 임대료
64K	4,227,000	480,000	9-2항 참조	9-3항 참조
128K	6,763,000	827,000		
192K	8,454,000	1,175,000		
256K	10,144,000	1,539,000		
384K	12,681,000	2,190,000		
512K	16,907,000	2,843,000		
768K	21,134,000	3,962,000		
1,024K	25,361,000	5,055,000		
1.5M	33,815,000	7,167,000		
2 M	42,269,000	9,586,000		

2) 한국-미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속도(bps)	표준전용료	예비전용료	NMS이용료	Mux 임대료
64K	4,318,000	618,000	9-2항 참조	9-3항 참조
128K	6,908,000	1,102,000		
192K	8,636,000	1,588,000		
256K	10,363,000	2,089,000		
384K	12,953,000	3,015,000		
512K	17,271,000	3,943,000		
768K	21,589,000	5,612,000		
1,024K	25,907,000	7,255,000		
1.5M	34,542,000	10,467,000		
2 M	43,178,000	13,848,000		

9-2. NMS 이용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Mux 종류	월 정액
NB 3600/3645	1,094,500
NB 3612/3624	437,800
NB 3630	547,250
NB 823X	109,450

9-3. MUX 임대료: 구매가의 2.6%

9-4. 설치비: 10,000원

9-5. 장기계약 할인

기 간	할 인 율
2년	7%
2년후 계속사용	10%
3년	10%
3년후 계속사용	15%
5년	15%
5년후 계속사용	18%

※ 표준전용료 요금만 적용

9-6. 할인반환금: (할인전 월사용료 * 사용개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9-7. 해제료: 서비스 개통 전 취소시 월정액의 10% 부과

9-8. 고객보상제도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

월 장애시간	보상율	보 상 기 준
45분 미만	0%	보상금액 = (매월 납부할 총액) x 보상율
45분 이상 ~ 2시간 미만	10%	
2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0%	
6시간 이상	35%	